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,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,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(이하 “디지털서비스”라 함)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및 선정된 서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9조의2 제1항, 안 제9조의3, 안 제9조의4, 안 제9조의5 신설)

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
나.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9조의2 제2항, 제3항)

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며, 과학기술정보

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「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」 국무회의 상정(6.23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성화) ① 과학기술정보

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(이하 “디지털서비스”라 한다) 중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(이하 “적합서비스”라 한다)를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. 심사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1.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

2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

3.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

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(이하 “이용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

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정보를 제2항의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
제9조의3(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합서비스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.

1. 심사 대상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
2. 정보통신 분야 박사(석사)학위 취득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단체 또는 민간협회에서 3년(5년) 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
3.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
(명예교수는 제외)

4.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

5.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.

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
⑧ 위원회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(위원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9조의4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)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3. 해당 디지털서비스 기업에서 최근 3년 내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
4.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디지털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9조의5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6. 제9조의4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0조제1항 중 “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국가기관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신 설>		제9조의2(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(이하 “디지털서비스”라 한다) 중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(이하 “적합서비스”라 한다)를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. 심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1.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.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

<신 설>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(이하 “이용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

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정보를 제2항의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
제9조의3(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서비스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

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
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
되도록 한다.

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
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
원 중에서,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
촉한다.

1. 심사 대상 디지털서비스와
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
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
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
하는 공무원

2. 정보통신 분야 박사(석사)학
위 취득 후 디지털서비스 관
련 단체 또는 민간협회에서 3
년(5년) 이상 경력이 인정되는
사람

3.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
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에
있는 사람(명예교수는 제외)

4.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 취
득 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
또는 준정부기관에서 디지털

서비스 관련 업무를 5년 이상
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

5.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
지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
인정되는 사람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
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
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
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
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
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
며,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
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
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.

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
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
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를 각
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
만,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
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

<신 설>

다.

⑧ 위원회는 회의마다 구성되는
위원(위원장을 포함한다. 이하
이 항에서 같다) 과반수의 출석
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
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
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9조의4(위원의 제척·회피) ①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
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
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
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
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
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
한다)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
동권리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
제공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전
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
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, 자
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
<신 설>

3. 해당 디지털서비스 기업에서
최근 3년 내 근무한 적이 있는
경우

4.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
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
하는 당사자로부터 지원받은
후원금이 해당 디지털서비스
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
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
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
단되는 경우

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
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
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9조의5(위원의 해임 및 해촉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
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
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
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
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
제10조(수요예보의 방법 등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 등”이라 한다)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<u>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4. <u>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</u> 5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 6. <u>제9조의4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/u> 제10조(수요예보의 방법 등) ① 국가기관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연 락 처